

# 대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위원회(KMPCB) 시행세칙

제정: 2023.03.21

## 제1장 목적

### 제1조 (목적)

본 세칙은 대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위원회의 정관 29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자문위원회

### 제2조 (목적 및 구성)

- 본 회의 정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- 자문위원은 전직 회장 및 각계 원로 인사 중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.
- 간사는 본회 총무이사가 맡는다.

### 제3조 (임기)

- 임기는 1월 1일을 시작으로 후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.
- 결원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 제4조 (업무)

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.

- 본 회의 활동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
- 본 회의 사업에 대한 자문
- 기타 본 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

### 제5조 (회의)

- 본 위원회의 회의는 본회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.

### **제3장 실무위원회**

#### **제6조 (목적 및 구성)**

1. 본 회의 정관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2. 실무위원회는 의학물리학, 방사선종양학, 핵의학 부위원회로 구성된다.
3.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위원장 1명(수석이사)
- ② 부위원장 3명
- ③ 위원 6명 이내

#### **제7조 (위촉)**

1. 위원장은 회장의 위촉에 따라 수석이사가 겸임한다.
2. 부위원장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.

#### **제8조 (업무)**

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본 회 활성화를 위한 유관학회 별 대외홍보에 대한 사항
2. 본 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학회 협조 요청
3. 기타 대외홍보 및 협조에 대한 사항

#### **제9조 (기타)**

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
### **제4장 고시위원회**

#### **제10조 (목적 및 구성)**

1. 본 회의 정관 제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시위원회를 둔다.
2. 고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- ① 위원장 1명 이상
- ② 간사 1명 이상

③ 위원 1명 이상

**제11조 (업무)**

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대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을 위한 자격시험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
2. 대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시험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허에 관한 사항
3. 자격시험 문제 출제 및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
4. 자격시험 응시료 결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

**제12조 (기타)**

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
**제5장 기관인증위원회**

**제13조 (목적 및 구성)**

1. 본 회의 정관 제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.
2. 기관인증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위원장 2명
- ② 간사 1명
- ③ 위원 8명 이내

**제14조 (업무)**

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기관인증 신규 신청 및 재인증에 대한 승인 또는 불허에 관한 사항
2. 기관인증 신청료 결정에 관한 사항
3. 기관인증 평가 시행 절차에 대한 사항
4. 기타 기관인증에 관한 사항

**제15조 (기타)**

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
## **제6장 기록·교육위원회**

### **제16조 (목적 및 구성)**

1. 본 회의 정관 제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록·교육위원회를 둔다.
2. 기록·교육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- ① 위원장 2명
  - ② 기록간사 1명, 교육간사 1명
  - ③ 위원 3명 이상

### **제17조 (업무)**

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자격회원 대상의 자격유지 프로그램(MOC) 및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
2. 자격회원의 자격유지에 대한 승인 또는 불허에 관한 사항
3. MOC 신청료 및 교육 프로그램 등록비 결정에 관한 사항
5. MOC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
6. 기타 MOC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
### **제18조 (기타)**

본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

## **제7장 부칙**

본 세칙의 시행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23.03.21)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(2023.03.21 제정).